

< 시장동향(12월) >대한민국 입국 사증 관련 자료

2025.12.22./ 올란바토르지사

▷ 필요한 서류: 위임장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 미입증시 수령 불가)

[표-1] 사증접수 대행법인

No	대행사명	법인명	No	대행사명	법인명
1	대한민국 비자센터	KVAC	* 2차 점검을 통해 대사관에 접수 완료		
2	'A' 비자대행기관	Key Bridge	9	'H' 비자대행기관	Od Maral ODC
3	'B' 비자대행기관	한마음 법무법인	10	'J' 비자대행기관	디도여행사
4	'C' 비자대행기관	Buryat Ombol	11	'O' 비자대행기관	Tenger Altai Trade O&K Construction
5	'D' 비자대행기관	Garnet Od	12	'L' 비자대행기관	Datsun
6	'E' 비자대행기관	Frontier Journeys	13	'M' 비자대행기관	Log Consulting
7	'F' 비자대행기관	G&SK Corporation	14	'N' 비자대행기관	
8	'G' 비자대행기관	부산(Born Fresh)			

□ 대한민국 입국 사증 관련 변경 사항

○ 방한 몽골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한국관광업계 참고용

* 주의사항: 아래내용은 방한상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내용을 ('25.12.12 기준)으로 참고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내용 변경될 수 있음으로 대사관 홈페이지 확인 반드시 필요

· 방한 비자 신청자 대상 구비서류 지침 및 규정 상시 변동 : 2025.12.12일 기준으로 작성됨
· 비자 신청인은 비자 신청 후 비자 불허를 받은 경우 3개월 후 다시 비자 신청 가능함
· **변동 조치** : 대한민국 사증 신청과 관련하여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은 12.15(월)부터 사증 거부 처분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대한민국 사증 신청할 수 있음.

○ 사증 거부 처분 후 비자 신청할 수 있는 기간 / '25.12.15 이후 시행

개정 전	개정 후
6개월	3개월

□ 주몽골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정 사증 접수 대행기관 정보

○ 사증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비자센터(KVAC) 또는 공인대행법인 (14곳)을 방문하여 사증접수 대행업무 운영중임.

-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(KVAC) 운영 시기 : 2020.03.16.일부터~ 현재까지
- 13개의 비자 접수 대행 지정 기관 운영 시기 : 2024.01.01일부터~ 현재까지
· 비자접수단계: (1차 단계) 비자 대행기관 → (2차 단계)KVAC → (3차 단계) 주몽골한국대사관
· 비자 접수 소요기간: 평균 3일

○ 대한민국 사증 발급 여권 수령 관련 개정 사항:

- 사증 신청이 발급·거부 여권 교부 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입증자료로 (직계가족 범위: 부모, 배우자, 자녀) 수령하였으나 2025.12.15.일부터 대리 수령 가능 대상 범위를 확대함.
▷ 가능한 범위: 형제, 자매, 삼촌, 사촌

□ 관광객 대상 발급 단기 사증(비자) 종류

○ 관광객 대상 사증(비자)을 90일 이하 기간으로 정한하여 발급하고 있으며, 91일 이상 기간의 대상 비자는 장기체류 대상으로 발급됨.

[표-2] 관광객 대상 발급 사증(비자) 종류

기간	체류가능기간	관광객 대상 발급 사증(비자) 종류
단기	90일 이하 사증	① 단기초청 (C-3-1)
		② 일반관광 (C-3-9 / 단수 및 복수)
		③ 의료관광 (C-3-3)

- **(단기초청/C-3-1)** :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, 행사,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,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,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가 발급되는 비자 종류임
· 몽골 특성상 현지 기업, 공무원 등 '국내 대형 엑스포, 단기 연수 참가' 등 목적으로 단순 관광 아닌 특정 목적이 있는 단체의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비자 발급 받는 경우 대다수

단기초청 /C-3-1) 국내기관 초청 구비서류	① 초청장(명단, 초청목적, 사유, 경비 부담사항, 초청기간 기재) ②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(최근 6개월 이내 발급) ·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하며 발급일이 6개월 지난 경우 한국세무서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재발급 가능. 재발급은 기관에서만 가능하며 개인이 신청 불가능함을 유의. ③ 비자 발급 협조 요청 공문 ④ 행사 (교육, 연수, 세미나, 업무 협의 등) 일정, 행사 소개 및 개요, 입국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요망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**(일반관광/C-3-9)** : 순수 관광객(FIT) 대상 발급되는 사증(비자) 종류임.

일반관광/ C-3-9	※ 공통구비 서류 ① 직업 입증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 등록증 등) ② 재정 입증서류(사회보험 납세증명서, 은행거래내역서(최근6개월) ③ 기타(혼인증명서, 여권, 증명사진, 미성년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등)	
	기간	이전 1년 ▷ 3년 ▷ 5년 변경 후 3년 ▷ 5년
복수사증 /C-3-9	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전 최근 2년 이내 4회 통상 5회 이상 방문자 복수 사증 신청 가능 · 이전 경제협력개발기구 (OECD) 회원국 방문한 경력이 있는자 (최근 5년 2개국 이상 또는 3회 이상 방문자 간이신청 대상자로 경제력 입증 서류 면제) · 대한민국 내에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1년 이상 현재 장기체류하고 있는자의 부모, 배우자의 부모, 19세 미만 자녀가 복수 사증 신청 가능 · 특정질병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복수로 입국할 필요성이 있는 자가 의료관광(C-3-3) 신청 가능

- **(의료관광/C-3-3)** : 한국 내 자선기관 무료수술 예정자 및 중증 환자일 경우

간병인 동반 비자 신청 가능하며, 필요 시 의료관광복수비자 신청가능함.

복수사증 /C-3-9	기간	단기 사증	복수사증
	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단기(단수) 비자만 신청 가능 · 과거 의료관광(C-3-3)으로 국내 2회 이상 방문자 · 진료(수술)비 한화 1,000만원 이상 사전납부자 · 국내 수술 예정자 · 급성 중환자 · 고령 연금수령자 ·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한국내 수술기록 보유자 · 한국 내 자선기관 무상 수술 예정자 · 동반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의료관광 (C-3-3) 동반가족 / 한국의료기관으로부터 간병인 및 동반 초청장 보내준 경우 동반가족 요건으로 신청 가능/ · 동반가족 범위: 배우자, 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

○ 의료관광/C-3-3 사증 신청 관련 개정 사항:

- 의료관광(C-3-3)사증 신청은 원칙적으로 비자센터(KVAC) 또는 공인대행법인 (13곳)을 방문하여 사증 접수할 수 있었으나 2025.12.15.일부터 오로지 '비자 센터 (KVAC)' 의료관광 전담 데스크를 이용해야 함.

단기초청 /C-3-1) 국내기관 초청 구비서류	① 초청장(명단, 초청목적, 사유, 경비 부담사항, 초청기간 기재)
	②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(최근 6개월 이내 발급) ▪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하며 발급일이 6개월 지난 경우 한국세무서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을 통해 재발급 가능. 재발급은 기관에서만 가능하며 개인이 신청 불가능함을 유의.
	③ 비자 발급 협조 요청 공문
	④ 행사 (교육, 연수, 세미나, 업무 협의 등) 일정, 행사 소개 및 개요, 입국목적 입증하는 서류 제출 요망

□ 기타 참고 자료

○ 사증 종류별 발급 소요 기간

의료사증, 사증발급인정서	기관 초청	단기방문 •방한 관광
7일	30일	30일

○ 2024년도 방한 관광 비자 심사 기간 변동 사항

일자	2024.1.22	2024.3.25	2024.5.3	2024.8.22	2024.10.16일
심사소요일	80일	75일	60일	40일	30일

#: 2024년 10월 16일 이후로 개정 사항 없음